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의무(항만사업자)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백만원 과태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 설정(안 별표5)

- 1)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4조제2항(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 2)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법 제16조제2항(자동차의 출입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의무)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 2023. 4.)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없음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제4의2호	50	65	80
--	-------------	----	----	----

별표 5 제2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24조제6호	50	65	80
--	-----------	----	----	----

별표 5 비고 전단 중 “제2호마목”을 “제2호바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9